

대법원 2019. 3. 28 선고 2018다292098 판결 [보증채무금]

재판경과

대법원 2019. 3. 28 선고 2018다292098 판결

광주지방법원 2018. 11. 7 선고 2018나53169 판결

전 문

원고, 상고인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근우

피고, 피상고인B

판결 선고 2019. 3. 28.

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. 11. 7. 선고 2018나53169 판결
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이 유

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사건이므로 그 법 제3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

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.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위 규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.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,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대법관김상환

대법관박상옥

주심대법관안철상

대법관노정희